

[별표 1] <개정 2011.11.25>

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5호 관련)

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 제1종 보호시설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의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6)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 8)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료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1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및 제28호에 따른 공연장·예식장·전시장 및 장례식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건축물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에 따른 수용 정원이 20명 이상인 건축물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 제2종 보호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건

축물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